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 산 시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0-38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 9. 3.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재계약 결정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위탁사무명

-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16조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1】

○ 필요성

- LED전자게시대 광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

- 민간위탁 기간 : 2026. 9. 4. ~ 2028. 9. 3.(2년)
- 민간위탁 사무내용
 - LED전자게시대 광고 운영 및 유지관리

- 광고 신청 접수, 심사 및 검인
- 광고 송출 및 콘텐츠 관리
- 광고 신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그 밖에 LED전자게시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5
- 규모 : 표시면적 12㎡ (가로 4.6m × 세로 2.6m 지주높이 6m)
- 위탁예산 : 비예산(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충당)
- 광고요금 : 상업용 광고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 “위탁자”에 납부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6. 5. 22. ~ 5. 29.
 - 평가자 : 8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6명)
 - 평가내용 : LED 전자게시대 업무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적합(80점) ※ 기준점수 70점 이상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2026. 8. 5.(수) 10:30
 - 심사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 심사자료 서류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 : 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 심사내용 : 수탁자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심사결과 : 적격(87.5점) ※ 기준점수 70점 이상

☐ **향후일정**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9.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16조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제16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장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 위탁기간의 연장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LED전자게시대의 광고 운영, 콘텐츠 송출, 시설 유지관리 등은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안산시의 관리·감독과 수탁기관의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광고 서비스 및 시설 운영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유지관리 및 광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절감과 운영 비용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광고 운영, 콘텐츠 제작·송출, 전광판 유지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광고 송출 실적, 시설 운영실적, 유지관리 실적, 민원 처리현황 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감독,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광고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업체가 참여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독과점 등 시장 왜곡 우려가 적음
검토 종합 의견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운영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안산시의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붙임 3】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예산 수반사항 없음

※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